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21. 4. 23.(금)

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우경수

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 이유

- 2021년도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**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: 2,250백만원(도 990 / 시군 1,260)**

○ 출연 목적

-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급증하는 신용보증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

⇒ 코로나19 정부 특례보증 공급 확대 등으로 보증사고 및 손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 필요

○ 출연 내역 : 재단 자본금(기본재산) 확충 출연금 1식

※ 세부내용 출연 사업계획서 참조

○ 기대 효과

-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으로 보증 잔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긴급한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여력 유지
-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기업·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통한 조기 경기회복 지원
-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

5. 검토의견

□ 충북신용보증재단

○ '2021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'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¹⁾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

○ 출연규모는 총 22억 5천만원으로 2016년 30억(도 12, 시군18) 출연 이후 첫 출연금이며, 2020년 까지 총 568억원(도329, 시군239)이 출연되었음

〈 도시군 기본재산 출연금 〉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계	(점유비)	'15까지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
국 비	286	16.5%	286	-	-	-	-	24
도 비	329	19.0%	317	12	-	-	-	-
시 군 비	239	13.8%	221	18	-	-	-	-
금융회사	876	50.7%	515	52	46	64	65	134
계	1,730	100.0%	1,315	82	46	64	65	158

1)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지원이 이루어 졌으며,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에 따른 자금난 심화 및 폐업 속출, 경기회복 장기 소요 등으로 향후 대위변제(손실) 발생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따라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법정 보증한도²⁾ 초과가 예상되는 바, 재단의 안정적 보증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해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의 법적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,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〈'20년도 보증공급 및 신규보증 지원실적〉

(단위 : 건, 억원)

구 분	총공급 (신규보증 + 기한연장)			신 규 보 증			
	목 표	실 적	달성률	목 표	실 적	달성률	'19년도 대비
건 수	22,700	36,252	159.7%	12,200	24,322	199.4%	2.2배 ↑
금 액	5,000	8,526	170.5%	2,900	6,146	211.9%	2.4배 ↑

- 다만,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경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, 이번 출연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보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,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계적·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2)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19조*(보증의 한도) :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 이내 운용
 ※ 신용보증 적정 운용 배수 : 잔여자본금 10배 수준